

무역상무연구  
제65권  
2015. 2, pp. 117~139.

논문접수일 2015. 01. 27.  
심사완료일 2015. 02. 21.  
게재확정일 2015. 02. 24.

## TMA의 운용과 주요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 채진익\*

- 
- I. 서 언
  - II. BPO의 도입과 의의
  - III. TMA의 메커니즘과 전자매칭
  - IV. 주요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시사점
  - V. 결 언
- 

주제어 : BPO, URBPO, TMA, 전자매칭, 비즈니스 시나리오

### I. 서 언

국제무역에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기관)는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와 전자시스템 기반의 ‘무역서비스 유틸리티’(Trade Service Utility: TSU)를 개발한데 이어 은행의 지급의무를 약정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BPO’(Bank Payment Obligations) 솔루션을 고안했다. 이에 따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그 통일 규칙으로 URBPO(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URBPO 750E)을 제정·공포하여 2013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E-Mail : jinchaek@kongju.ac.kr

전통적인 신용장 제도에서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한 대금지급이 보장되는 바와 같이 BPO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데이터 셋(Data Set)이 그 베이스라인(baseline)과 매치되면 대금지급이 보장되는 채무은행의 취소 불능의 독립적 지급약정이다. BPO는 국제무역을 위해 매도자와 매입자를 위한 전자기반의 새로운 무역결제솔루션이다.<sup>1)</sup>

eUCP(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전자제시를 위한 UCP 보칙)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신용장 제도와는 달리 BPO는 전 무역거래 프로세스의 전자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된 무역서류가 은행에 제시되면 당해 은행이 그 서류상의 내용을 전자 데이터화하여 그 이후부터 모든 서류를 전자적으로 거래하게 된다. 더욱이 TSU에서 BPO는 처음부터 거래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오픈 어카운트 형태로 거래를 하고 그 이후 필요에 따라 은행의 지급약정을 추가하는 형태의 BPO 거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BPO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무역서류를 데이터화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그동안 전자무역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BPO는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시된 데이터의 매칭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매칭여부는 TMA(Transaction Matching Application: 거래매칭애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TMA에서 전자제시와 그 매칭 메커니즘, 그리고 이를 반영한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MA에서 운용되는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과 그 매칭 및 지급결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그 전자적 제시 및 매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는 아직 본 제도가 시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차기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 II. BPO의 도입과 의의

### 1. BPO의 개념과 의의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무역결제 방식이 신용장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오픈어카운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욕구를 해결위해 오픈 어카운트 기반의 SWIFTNet TSU가 고안되었다.<sup>2)</sup> TSU는 원칙적으로 오픈 어카운트 방

1) [www.bangkokbank.com](http://www.bangkokbank.com)(2013.12.03).

식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또 이를 위한 매칭 및 워크플로우 솔루션이다.<sup>3)</sup> 그 이후 오픈 어카운트 기반의 TSU에 옵션(option)으로 은행의 지급약정을 추가한 BPO를 고안하게 되었다.<sup>4)</sup> BPO는 설정된 TSU 베이스라인의 조건에 일치하는 조건으로 수취은행(recipient)에 대한 채무은행(obligor bank)의 취소불능의 지급약정이다. 이는 BPO가 TSU의 베이스라인(baseline)과 데이터의 성공적인 매칭, 즉 데이터의 매칭을 조건으로 그 지급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BPO는 ICC URBPO에 의거 규율되기 때문에 은행은 기본 메시징 표준은 물론 URBPO를 준수해야 한다.<sup>6)</sup>

BPO는 신용장의 지급보장은 물론 오픈 어카운트의 이점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종이 없는 전자무역금융결제의 대안으로 도입되었다.<sup>7)</sup> BPO는 은행의 지급약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 메커니즘은 전통적인 신용장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통적인 거래에서와는 달리 거래방식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즉 오픈 어카운트와 신용장 방식을 통합한 TSU에서 처음부터 은행의 지급약정이 부여된 BPO를 약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TSU(오픈 어카운트)로 약정하고, 그 이후에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조건변경에 의해 자유롭게 BPO를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제방식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고 거래 조건의 선택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거래절차상의 편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동화 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URBPO 제3조에서는 BPO에 대해 본 규칙 제10조 c항에<sup>9)</sup> 따라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된 모든 데이터 셋이 접수된 후, 그 데이터가 매치되거나 또는 데이터 미스매치가 승인되는 경우 수취은행에 약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지급 약정

2) <http://www.swift.com>(2013).

3)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 도입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2, p. 420.

4) Madhav Goparaju, Kersten Martin Meyer and Carol Chiu, “Five specialists analyze the new BPO rules”, *DCInsight*, Vol. 19, No 2, April - June 2013, p. 9; David Hermah, “The BPO: a banker’s perspective”, *DCInsight*, Vol. 18, No 2, Apr-June 2012, p. 15.

5) Robert Marchal, “The Trade Services Utility: latest developments”, *DCInsight*, Vol. 16, No 1, January - March 2010, p. 22.

6) Vinod Madhavan, “BPO - a Step toward electronification in SCF”, *DCInsight*, Vol. 19, No 2, April - June, 2013, p. 11; 채진익,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무역연구 제9권, 한국무역연구원, 2013. 9, p. 170.

7) Madhav Goparaju, Kersten Martin Meyer and Carol Chiu., *op.cit.*, p. 9; 채진익(2013.9), 전계논문, p. 178.

8) 채진익(2011.2), 전계논문, p. 423.

9) “채무은행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지급약정 세그먼트에 명시된 지급조건에 따라 수취은행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해야 한다. 단,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BPO의 유효기일 이전에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된 모든 데이터 셋을 제출하여, 그 데이터를 대조한 후에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URBPO 제10조 c항).

을 부담하고 만기에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은행의 독립적인 취소불능의 지급약정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PO는 전통적인 신용장 방식에서 수익자가 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한 서류제시를 조건으로 대금결제 that 이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TMA의 베이스라인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무역결제가 이행된다.<sup>10)</sup> BPO는 물리적 서류가 아닌 전자제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용장방식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sup>11)</sup> 즉 BPO는 한편으로 금융기관이 공여하는 지급보장으로 신용장을 통해 확보되는 비즈니스의 편익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프로세스와 전자매칭에 이르는 일관처리 프로세싱(STP)의 효율성으로 오픈 어카운트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공한다.<sup>12)</sup> 따라서 BPO는 21세기의 공급체인금융의 새로운 솔루션이며, 국제무역에서 대안적인 무역결제수단이다.<sup>13)</sup>

<그림 1> BPO의 프레임워크(표준, 프로세스 및 규칙)



자료: ICC Guide 751E.

10) D. Hennah, "The BPO: a banker's perspective", *DCInsight*, Vol. 18, No 2, Apr-June 201.

11) 채진익, 전자무역론, 청목출판사, 2014, p. 444

12) ICC,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 Pub. No. 751E, 2013, pp. 27~28.

13) ICC, "A Banking Commission Supply Chain Finance Project : "Bank Payment Obligation", 2011. p. 2; 채진익(2013.9), 전개논문, p. 179.

## 2. BPO 베이스라인

URBPO상의 BPO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베이스라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베이스라인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URBPO 제3조에서는 “베이스라인”은 매수자의 거래은행 또는 매도자의 거래은행이 TMA에 제출한 기초 무역 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설정된 베이스라인”은 TMA가 제로(zero) 미스매치를 포함하고 있는 ‘설정된’ 상태의 베이스라인 매치 보고서를 발송하는 때부터 베이스라인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베이스라인은 은행 간에만 설정될 수 있다. 그들 은행 모두는 “TMA로 칭해지는 동일한 메시징 플랫폼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 TMA를 통하여 구조화된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매수자의 거래은행과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특정 거래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다. 양 거래은행의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Initial Baseline Submission)이 동일하다면(즉 그 제시가 일치하다면), 그 때 베이스라인이 설정된다. 그 베이스라인이 옵션인 BPO를 규정하고 있다면, 또한 BPO가 설정(개설)되며,<sup>14)</sup> 그 BPO는 TMA를 통하여 설정된다.<sup>15)</sup>

따라서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BPO가 최종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매도자의 거래은행(수취은행)이 제시해야 하는 데이터 요소를 규정한다. BPO는 완전히 자동화된 환경에서 금융공급체인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프로세스(플랫폼) 및 규칙의 완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이들 원칙은 익숙해져 있는 화환신용장의 프레임워크에 적용되는 원칙과 유사한다. 즉 BPO 거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요소는 우선, ISO 20022 TSMT 메시지 표준, TMA의 프로세스 및 워크플로우, 그리고 URBPO가 있다.<sup>16)</sup>

## 3. 채무은행의 지급약정

BPO는 채무은행의 취소불능이며 독립적인 지급약정이다. BPO는 준거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고 구속·강제력 있는 채무은행의 지급약정을 구성한다.<sup>17)</sup>

14) ICC 751E, pp. 27~28.

15) ICC,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Version 1.0, Publication No. 750E, 2013, p. 8; 채진익,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12, pp. 125~126.

16) ICC 751E, p. 25.

17) ICC, *op.cit.*, p. 8; 채진익(2013.12), 전제논문, p. 126.

URBPO 제10조에서는 채무은행의 지급약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본 규칙 제 10조 a항에서 “채무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BPO에 따라서 취소불능으로 구속된다. i) 베이스라인이 설정될 당시 BPO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편입되는 때이다. TMA는 본 규칙 제9조 d항에 의거하여 제로 미스매치의 베이스라인 매치 보고서 또는 “설정된” 상태의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통지 중 어느 하나를 각 참여은행에 발송한 때이다. ii) 또는 BPO가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조건 변경으로 편입되는 때이다, TMA는 본 규칙 제11조 c항에 따라 조건변경 승인통지 또는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통지 중 어느 하나를 각 참여은행에 발송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8)</sup>

BPO의 지급보장은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은행(또는 은행)의 강제력 있는 약정이다. 단, 수취은행(매도자의 거래은행)이 제출한 데이터가 약정된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sup>19)</sup> 본 규칙 제10조 제c항은 “채무은행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지급 약정 세그먼트에 명시된 지급조건에 따라 수취은행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해야 한다. 단,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BPO의 유효기일 이전에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 셋 (Data Set)을 제출하여, 그 데이터를 대조한 후에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i) 데이터가 매치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BPO는 항상 단일의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관계한다. 설정된 베이스라인은 하나 이상의 BPO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각 BPO는 한(one) 채무은행의 지급약정이다(URBPO 10(b)). BPO에 대한 채무은행의 지급약정은 당해 BPO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은행은 그 자신에 관련되는 BPO의 금액만큼 구속되며, 동일하게 설정된 베이스라인 상에서 다른 채무은행의 대금지급 여부에 관계없다. 그 약정의 해제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해제해야 한다.<sup>21)</sup>

---

18) 채진익(2013.12), 전계논문, p. 126; 채진익, 전계서, p. 390.

19) ICC 751E, p. 29.

20) 채진익(2013.12), 전계논문, p. 127; 채진익, 전계서, p. 391.

21) ICC 751E, pp. 94~95.

### Ⅲ. TMA의 메커니즘과 전자매칭

#### 1. TMA의 의의와 가입

##### 1) TMA의 개념과 의의

URBPO 제3조에서는 “TMA”에 대해 “참여은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처리 데이터 매칭 및 워크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TMA는 참여은행으로부터 접수한 TSMT 메시지를<sup>22)</sup>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그 메시지상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대조한 다음에 관련 모든 TSMT 메시지를 각 참여은행에 전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PO 거래에서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의 매칭 및 워크플로우 솔루션이다.

URBPO(BPO 통일규칙)는 참여은행과 TMA 간 교환되는 메시지는 ISO 20022 TSMT 표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한다. TSU는 ISO 20022 메시징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메시지는 금융기관 간 또는 금융기관과 TSU 간의 이용을 위해 디자인되었다.<sup>23)</sup> 금융기관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 약정된 절차(methodology)를 기술하고 있는 표준을 사용한다.<sup>24)</sup> 따라서 URBPO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모든 TMA는 URBPO 제4조(메시지 정의)에 정의된 대로 최소한 ISO 20022 TSMT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메시지는 BPO와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거래 워크플로우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이는 또한 승인(acknowledgement)과 보고서(reports)를 포함한다.<sup>25)</sup>

TMA 시스템(scheme)에 참여는 은행에만 제한되어 있다. ISO 20022 TSMT 메시지 표준과 URBPO의 의무적인 선택은 참여은행과 TMA 간의 데이터 교환에만 적용될 수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 및/또는 서류의 교환에 적용되는 의무적

22) “무역서비스 관리(TSMT) 메시지” 또는 “TSMT 메시지”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무역서비스 관리 비즈니스 분야로 발행되는 ISO 20022 메시지 유형을 의미한다(URBPO 제3조). 거래에 참여한 모든 은행과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TMA 간 정보교환과 관련 보고서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특별히 고안된 50여종의 ISO 20022 TSMT 메시지가 있다(ICC Guide, pp. 45~54. 참조).

23) SWIFT, “The Value of SWIFT to the Financial Supply Chain”, Issue 6 Q2 2011. p. 8; 채진익(2013.9), 전계논문, p. 176.

24) [http://www.swift.com/news/standards/ISO20022\\_Business\\_Model\\_reviews\(2013\)](http://www.swift.com/news/standards/ISO20022_Business_Model_reviews(2013)) ; 채진익(2013.9), 전계논문, p. 176.

25) ICC 751E, p. 55; 채진익(2013.12), 전계논문, p. 119.

인 규칙이나 또는 표준은 없다. 이들 교환은 통상적으로 종이를 기반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은행 간의 데이터 교환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나 또는 표준도 없다. 이 데이터는 어떠한 표준과 포맷을 이용하여 관계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선호되는 어떠한 채널을 통하여 교환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 2) TMA의 가입

BPO 비즈니스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은행은 자신의 기업고객에게 그 BPO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TMA에 가입해야 한다. BPO 관련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은행들은 동일한 TMA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은 BPO의 설정에 있어서 공유기반의 TMA를 통하여 약정된 데이터 요소의 매칭을 조건으로 하는 은행 간 협업이다. 따라서 모든 참여은행은 동일한 TMA에 참여하거나 또는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sup>27)</sup>

통상 TMA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되어야 하는 연가입비가 있을 것이다. TMA에 가입은 일반적으로 적격한 금융기관에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TMA 시스템의 운영자는 적격성 기준을 결정할 것이다. TMA 시스템의 운영자는 그의 회원 명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은 TMA 회원을 알 수 있다. TMA 가입은행은 스스로 구체적인 운영요건과 통지기간을 포함하여 그 시스템의 운영조건을 숙지해야 한다.<sup>28)</sup>

## 2. TMA의 거래상태

거래가 TMA 내에서 여러 단계의 프로세싱이 진행됨에 따라 TMA의 상태는 변한다. 아래 <표 1> 은 어떠한 시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TMA 거래상태”의 일부를 보여준다. 상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매치, 베이스라인 조건변경, 상태변경의 요구 또는 타이밍 위반(timing violation)의 결과로 발생한다.<sup>29)</sup>

모든 TMA 거래는 매수자의 거래은행이나 또는 매도자의 은행이 발송한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Initial Baseline Submission) 메시지로 시작된다. 그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 메시지는 지급약정(Payment Obligation) 세그먼트(segment form)에 BPO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아닐 수도 있다. 송장으로부터 발췌된 데이터를

26) ICC 751E, p. 55.

27) ICC, *op. cit.*, 750E, p. 7.

28) ICC 751E, p. 56.

29) ICC 751E, p. 58.



이용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반면, 구매 주문서 또는 매도 주문서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BPO 세그먼트가 공란이면 BPO는 후일에 조건변경의 방법으로 추가될 수 있으며, 참여은행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sup>30)</sup>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 메시지를 접수하면, TMA는 독특한 거래식별자를 포함하는 승인 메시지를 발송할 것이다. 거래는 설정 전에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 메시지의 제출자는 그 TMA에 상태변경 요청 메시지를 제출해야 한다. 설정 후에 거래를 종료하기 위해 매수자의 거래은행 또는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그 TMA에 상태변경 요청 메시지를 제출해야 한다. TMA는 상대방 은행에게 상태변경 요청 통지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때 상대방 은행이 동의한다면 그 은행은 상태변경 요청 승인 메시지를 TMA에 발송할 것이며, 이로써 거래는 종료된다.<sup>31)</sup>

〈표 1〉 TMA 거래의 가능한 상황

TMA 거래상태	TMA 내용
신청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이 매수자의 거래은행 또는 매도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접수된다.
부분적으로 매치	매수자의 거래은행 또는 매도자의 거래은행(해당 되는 경우)의 베이스라인 재제출 후에 두 베이스라인 매치에서 일부 데이터 요소는 매치되거나 다른 요소는 매치되지 않는다.
설정	베이스라인 재 제출이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과 정확히 매치된다. TMA는 그 베이스라인이 "설정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로 미스매치의 베이스라인 매치 보고서를 발행한다.
진행(active)	데이터 셋이 설정된 베이스라인과 매칭을 위해 제출된다.
조건변경 요청	한 참여은행은 베이스라인에 대한 조건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며, 다른 참여은행은 수락하든가 또는 거절해야 한다.
상태변경 요청	매수자의 거래은행 또는 매도자의 거래은행이 상태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며, 그 상대방은행은 수락하든가 또는 거절해야 한다.
완료	모든 데이터 셋이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성공적으로 매치되었다. 그 베이스라인은 현재 다시 설정되거나 또는 완료된다.
종료	보고서 요청을 제외하고 더 이상 가능한 활동은 없다.

자료: ICC Guide 751E.

30) *Ibid.*

31) ICC 751E, p. 58.

### 3. TMA의 데이터 셋(Data Set)과 BPO 설정

#### 1) TMA 데이터 셋<sup>32)</sup>

ISO 20022 TSMT 메시징 표준에 의거하여 베이스라인과 대조를 위해 5종류의 데이터 셋을 TMA에 제출될 수 있다. 즉 거래명세(commercial :상업송장으로부터 발췌한 데이터에 근거), 운송, 보험, 증명서, 기타 증명서가 있다. 하나 이상의 베이스라인과 대조를 위해 데이터 셋을 제출할 수 있다. 예컨대 단일의 송장은 복수의 구매주문서와 매치될 수 있다.

TMA에서 최소 필드는 크게 베이스라인(Baseline), 송장 데이터 셋(Commercial Data Set), 운송데이터 셋(Transport Data Set), 보험데이터 셋(Insurance Data Set), 증명 데이터 셋(Certificate Data Set), 기타 데이터 셋(Other (Certificate) Data Set)이 있다.

우선 베이스라인에는 거래 참조번호, 구매주문서 (참조)번호, 매수업자 명 및 국가, 매수자의 거래은행 식별코드(BICB), 매도자 명 및 국가, 매도자의 거래은행 식별코드(BICB), 물품, 품목 당 수량 및 금액, 거래 데이터 셋 제출은행 식별자 코드(매도자의 거래은행 또는 제출은행)가 있다. 또 BPO는 옵션으로 채무은행, 수취은행, 금액, 유효기일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연락처에는 매수자의 거래은행 또는 매도자의 거래은행 중 한 은행을 포함한다.

둘째 송장 데이터 셋에는 거래 참조번호, 송장 데이터 셋 식별자, 송장번호 및 발행일자, 구매주문서 참조번호, 매수자 명 및 국가, 매수자의 거래은행 식별자 코드(BICB), 매도자의 거래은행 및 국가, 매도자의 거래은행 식별자 코드(BICB), 지급조건, 물품(품목 당 수량 및 금액), 결제조건(채권자 계정의 확인)을 포함한다.

셋째 운송 데이터 셋에는 운송 데이터 셋 식별자, 화주(명의 및 국가), 운송서류의 참조번호 및 발행일자, 요청 또는 실제 선적일자, 운송(적어도 한 원산지 항구 및 한 목적지), 구매주문서 참조번호를 포함한다.

넷째 보험 데이터 셋에는 보험 데이터 셋 식별자, 보험증권 발행자(명의 및 국가), 발행일자, 보험서류 참조번호, 부보금액, 피보험자(은행 식별코드: BICB) 또는 명의 및 주소), 클레임 제기장소가 있다.

다섯째 증명 데이터 셋에는 증명서 데이터 셋 식별자, 증명서 확인(identification), 증명서 유형, 자격인증(certified characteristics), 증명서 발행자(명의 및 국가), 발행일자가 있다.

그리고 기타 데이터 셋에는 증명서 데이터 셋 식별자, 증명서 확인, 증명서 유형, 증명서 발행자(명의 및 국가), 발행일자가 있다.

32) ICC 751E, pp. 58~60.

2) BPO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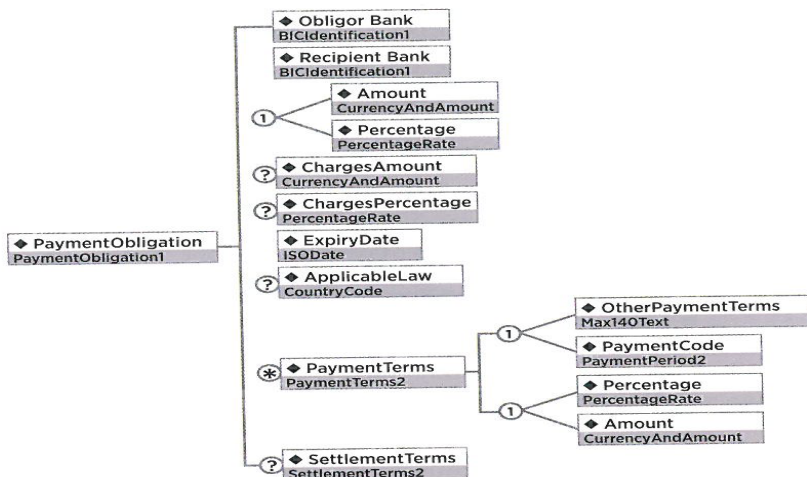
BPO는 베이스라인의 옵션 항목이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한다.

<표 2> TMA 베이스라인의 BPO 영역

항 목	내 용
채무은행	약정에 의거 지급해야 하는 은행
수취은행	약정에 의거 지급받게 되는 은행
금액	약정에 의거 지급되는 최대 금액
퍼센티지	약정에 의거 지급되는 최대 금액으로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퍼센티지(백분율)로 표현
수수료	채무은행에 의해 공제되는 수수료 금액
수수료 퍼센티지	채무은행에 의해 공제되는 수수료 금액의 채무은행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백분율
유효기일	BPO의 이용 가능한 최종 기일
준거법	BPO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지급조건 (지급코드, 퍼센티지 및 금액)	수수료 등의 공제 전 금액을 포함하여 대금(value)을 이체하는데 필요한 지급결제 프로세스 명세
결제조건	금액 이체를 규정하고 있는 지시사항

자료: ICC Guide 751E.

<그림 2> BPO는 TMA 베이스라인의 옵션



자료: ICC Guide 751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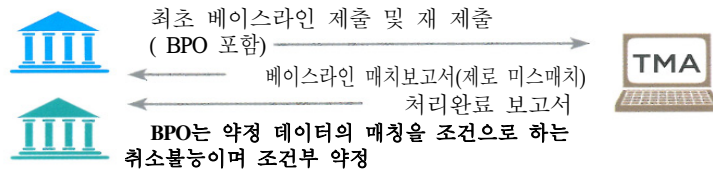
“기타 지급조건” 필드는 TMA에 의해 자구마다 매치될 수 있는 140자의 자유로운 텍스트를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채무은행으로 행동하는 매수자의 거래은행은 “이 BPO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언을 명시할 수 있다. 또는 매수자의 거래은행 이외의 채무은행은 “매수자의 거래은행이 매도자의 거래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BPO를 지급한다.”라는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그의 약정요건을 갖출 수 있다. 지급조건에서 요건은 은행이 이와 같은 성격의 지급약정을 체결할 때, 부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연성(a degree of flexibility)을 허용할 수 있다.<sup>33)</sup>

지급코드 및 퍼센티지 필드를 반복함으로써 채무은행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컨대 1월말 25%, 3월말 75%와 같은 지급일정을 표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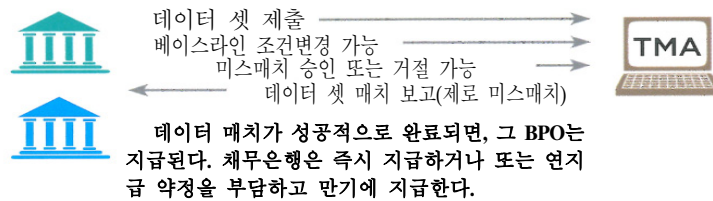
그리고 BPO의 최종 결제는 TMA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약정은 참여은행, 그들의 기업 거래처 및 다른 제3당사자 간에 체결되며, 그러한 약정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그 TMA의 범위 밖이다.<sup>34)</sup>

<그림 3> BPO 거래 라이프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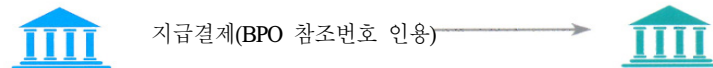
**PO 데이터의 매칭에 근거한 BPO 설정**



**데이터 셋 제출**



**지급 및 결제**



자료 : ICC 751E

33) ICC 751E, p. 62.

34) ICC 751E, pp. 62~64.

## 4. TMA 데이터 및 메시지 매칭

### 1) 데이터 및 메시징 규칙<sup>35)</sup>

ICC URBPO와 ISO 메시징 표준(ISO 20022 TSMT)은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각 TMA가 전유하는 다양한 규칙이 존재할 것이다. 이들 규칙은 제출된 데이터가 매칭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TMA의 회원약관(terms and conditions of membership)과 메시지 매칭규칙(TMA Message Matching Rules)에서 규정된 대로 메시지 매칭시스템의 규칙이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인 매칭규칙은 전 메시지에 유효한 규칙을 규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한 규칙의 확인은 일반적으로 TMA 기능의 일부를 형성할 것이다. 개별적인 메시지에 적용되는 제한과 규칙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컨대 메시지에서의 정보가 의무적인지 또는 선택적인지(optional) 또는 그 정보가 텍스트(text) 보다는 코드(암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일부 데이터 요소들은 “core”(핵심), 즉 항상 제시되어야 하고 또한 항상 매칭되어야 하는 요소들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시에 매칭 프로세스의 복잡성에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인 요소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매칭규칙은 메시지 요소가 ㉠ 또 다른 메시지의 똑같은 메시지 요소 또는 ㉡ 또 다른 메시지의 똑같거나 또는 별개 메시지 요소와 매칭해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그 매칭규칙은 어떻게 매칭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즉, “엄격히”(strictly) 또는 “대략적으로”(loosely) 매칭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여기에서 “엄격한 매칭”(matching strictly)은 한 필드의 내용이 매칭되어야 하는 상응하는 필드의 내용과 정확히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칭되어야 하는 요소는 자구별(character by character)로 대조되며, 그 양 필드의 대조 값(values)이 완전히 일치(identical)될 때만이 매칭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부분 데이터 요소는 엄격히 매칭될 것이다.

한편 “대략 매칭”(matching loosely)은 데이터 요소의 내용을 매칭 할 때, 대소문자(upper and lower cases), 스페이스(spaces) 및 맞춤법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파벳과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는 구두점(punctuation)으로 간주된다.

35) ICC 751E, pp. 64~65.

## 2) 매치전 TMA

상황에 따라서는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매칭을 위해 데이터 셋의 제출을 원할 수 있으나, 추후에 BPO의 추가에 대비하기 위해 매수자의 거래은행에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베이스라인에 규정된 데이터가 이미 매치되어 모든 참여은행에 통보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BPO는 개설될 수 없다. 이 목적은 “매치 전”(pre-match)으로 데이터 셋을 제출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상황에서 TMA는 매도자의 거래은행에만 데이터 매치 보고서를 발송할 것이다. 그 거래상황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으며, BPO를 추가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조건변경 요청은 여전히 가능한 상태이다.<sup>36)</sup>

## 3) 미스매치 및 거절

데이터 셋에 미스매치가 있는 경우에 TMA는 모든 불일치 부분을 하이라이트 표시하여(highlighting) 데이터 셋 매치 보고서를 발송함으로써 모든 참여은행에 통지한다. 매수자의 거래은행은 TMA에 미스매치 승인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데이터 미스매치를 승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URBPO 제10조 g항에서는 “채무은행은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데이터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그 미스매치가 매수자의 거래은행 또는 그 매수자의 거래은행 이외의 다른 채무은행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에는 지급하거나 또는 만기에 지급하기로 하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는 데이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다.<sup>37)</sup>

매수자의 거래은행이 유일한 채무은행인 경우에는 TMA는 요구된 조건변경을 수용하기 위해 그 베이스라인을 재검토할 것이다. 이 경우에 그 거래상황은 “완료”(complete)로 전환될 것이다. 매수자의 거래은행이 데이터 미스매치에 대해 거절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자의 거래은행은 TMA에 미스매치 거절(Mismatch Rejection)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에 TMA는 미스 매치된 데이터 셋을 폐기하거나 또는 무시할 것이며, 그 베이스라인은 “active”(유효한) 상태의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것이다. 미스매치는 항상 완전히 수리되든가 또는 거절된다. 일부 미스매치를 수리하고 그 밖의 다른 미스매치들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38)</sup>

매수자의 거래은행이 미스매치를 수리하였지만 제시은행 및/또는 매수자의 거래은행 이외의 채무은행이 있는 경우, TMA는 각 채무은행에 미스매치 승인통보

36) ICC 751E, p. 66.

37) ICC 751E, p. 95; 채진익(2013.12), 전개논문, p. 128.

38) ICC 751E, p. 67.

(Mismatch Acceptance Notification) 메시지를 발송한다. 그 제시은행 또는 그 채무은행이 그 미스매치 승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한 은행은 그 데이터 미스매치에 대하여 그 동의와 그의 계속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 메시지를 TMA에 제출할 것이다.<sup>39)</sup>

제출은행 또는 채무은행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은행은 역할 및 베이스라인 거절(Role and Baseline Rejection) 메시지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데이터 셋 제출은 TMA에 의해 폐기되고, 그 미스매치는 거절될 것이다. 그 베이스라인은 여전히 또 다른 데이터 셋, 베이스라인 조건변경 또는 상태변경(status change) 요청 등을 향후 제출 시까지 유효한(active) 상태로 남을 것이다.<sup>40)</sup>

## IV. 주요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시사점

### 1. 은행지원 오픈 어카운트(Bank-assisted Open Account)

오늘날 세계무역의 80% 이상이 화환신용장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금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오픈 어카운트 방식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오픈 어카운트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1)</sup> 여기에서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오픈 어카운트 방식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자는 매수자가 발행한 주문서에 따라 약정물품을 선적한 후 상업송장, 운송서류 등의 무역서류를 직접 매수자에게 송부하여, 그 매수자의 송장승인을 받아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며, 필요할 경우 매도자는 당해 수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sup>42)</sup>

이에 대해 2011년에 워싱턴 기반 BAFT-IFSA(The Bankers' Association for Finance and Trade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see [www.baft-ifs.com](http://www.baft-ifs.com))는 표준화를 평가·주도하며, 위험관리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역할과 관련성(relevance)을 강화하기 위해 그의 권한위임을 지지하여, 오픈 어카운트 무역 프로세싱과 오픈 어카운트 무역금융에 대한 표준정의(a standard set of product

39) ICC 751E, p. 67.

40) *Ibid.*

41) ICC 751E, p. 148.

42) 채진익,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Open Account 제도의 활성화 방안”, 무역학회지 제 3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7, p. 248.

definitions)를 발표하는데 선도했다. BAFT-IFSA의 정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오픈 어카운트 무역에 대한 명료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sup>43)</sup>

그들 정의는 오픈 어카운트 거래 라이프사이클(lifecycles)을 기술하고 있으며,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관련 무역서비스 프로세싱과 금융서비스를 확인한다. 부가적으로 이들 정의는 서비스 맞춤화 및 차별화를 권장하기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거래뱅킹 가치사슬(value chain)의 다른 요소를 커버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솔루션을 더욱더 보강할 수 있다.<sup>44)</sup>

〈표 3〉 금융체인 공급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유발점

공급체인 유발점	은행 프로세싱	은행 금융서비스
구매주문 약정	구매주문 통지	선적 전 금융
물품 창고 입고	서류점검/데이터 매칭	창고 금융
서류발행	서류/구매주문서 대조	매출채권 구매(매입)
서류제시	서류점검/데이터 매칭	선적 후 금융
서류승인	승인서류 관리	승인된 매출채권 금융
만기일	서류지급(결제)	미결제 금융 상환

자료 : BAFT-IFSA

## 2. 오픈 어카운트 프로세싱/서비스

오픈 어카운트 프로세싱은 구매주문서 업로드(upload), 데이터 매칭 및 지급결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역 서비스에 대한 기존 프로세싱 기반역량(capabilities)과 연결되어 있다. 본 활동의 중요한 관점은 공급체인금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의 교환과 공유이다.<sup>45)</sup>

### 1) 구매주문 통지

물품과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구매주문서는 매수자가 작성한다. 주문서의 작성 당시 매도자는 협업 플랫폼, 예컨대 팩스(fax), 전자메일(e-mail), 포탈(portal)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구매주문서와 기타 선적지시를 통지받는다. 일단 통지되면 매수자는 매도자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BAFT-IFSA).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이들 구매주문서 명세를 그들 자신의 거래은행에 업로드 해야 한

43) ICC 751E, p. 149.

44) *Ibid.*

45) ICC 751E, pp. 150~157.



다. 이 업무는 TMA의 밖에서 발생하며 URBPO의 범위를 벗어난다.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은 매수자의 거래은행에 의해 제출된다. 마찬가지로 매도자의 거래은행도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을 할 수 있다. 일단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이 접수되면, TMA는 처리완료 보고서(full push through report)를 작성하며, 그것은 요청된 베이스라인의 사본을 포함한다.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그 처리완료 보고서에 대한 회신으로 베이스라인을 다시 제출하여 그 거래가 TMA에 설정(약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두 은행인 매도자의 거래은행과 매수자의 거래은행만이 존재한다. 매도자 거래은행의 베이스라인 재제출(Baseline ReSubmission)이 매수자 거래은행의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Initial Baseline Submission)과 매치되면, TMA는 제로 미스매치의 베이스라인 매치보고서를 작성(생성)할 것이다. 또한 베이스라인이 BPO(옵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BPO가 설정된다. 그 시점에서 매수자의 거래은행은 채무은행이 되며,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수취은행이 된다.

본 거래에 참여하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있는 경우(예컨대 또 다른 은행이 그 베이스라인에서 채무은행으로 지정된 경우), 그 당시 베이스라인 상태는 그 상대방이 그 거래에서 채무은행으로서 그의 역할을 승낙하지 않는 한 또는 승낙할 때까지 “부분적으로 매치된” 상태이다. 이 은행은 매수자의 거래은행을 대신하거나 또는 매수자의 거래은행에 추가하여 채무은행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TMA는 그 채무은행에게 또 다른 처리완료 보고서를 발송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회신으로 그 은행은 그의 역할에 대한 그의 승인, 예컨대 채무은행으로서의 역할승인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 메시지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은행이 그의 역할을 수락한다면, TMA는 매수자의 거래은행과 매도자의 거래은행에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통보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그 두 은행에 통지한다. 그 베이스라인이 BPO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BPO의 수익자는 항상 매도자의 거래은행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이든 그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수취은행이 될 것이다. 반면 그 추가적인 다른 은행이 그의 역할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그 베이스라인은 설정되지 않는다. 매수자의 거래은행과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또 다른 은행이 채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요청받을 수 있도록 베이스라인의 조건변경과 같은 대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는 종결될 것이다.

## 2) 서류제시 및 데이터 매칭

서류는 매도자가 작성하고 제시한다. 그리고 오픈 어카운트 방식에서의 매칭기준은 매수자가 규정한다. 데이터 매칭은 서류점검을 대체한다. BPO 관련 거래에서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관련 데이터 요소는 이에 상응하는 상업송장 및 운송서류로부터 발췌되어 데이터 셋 형태로 그 TMA에 입력된다. 매도자는 그 데이터(또는 서류)를 매도자의 거래은행 또는 수취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상업송장을 작성하기 위해 이 데이터와 운송 데이터 셋을 이용할 것이다. 이들 데이터 셋은 TMA에 입력되어 설정된 베이스라인과 대조된다. 데이터의 대조가 제로 미스매치(Zero Mismatch)이면, 그 TMA는 제로 미스매치의 데이터 셋 매치보고서를 작성한다. BPO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베이스라인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의 매칭요건이 충족될 것이며, 그렇다면 그 BPO는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 3) 하자처리 및 분쟁해결

매칭결과가 매수자의 매칭기준과 제시된 서류 데이터 간에 불일치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그들 서류의 거절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통지받는다.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효율성을 위해 서류의 지급을 은행에게 사전에 수권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는 온라인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데이터의 대조결과가 데이터 셋과 설정된 베이스라인 간에 데이터 미스매치가 있는 경우에는 TMA는 그 미스매치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여 데이터 셋 매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매수자의 거래은행/채무은행은 이들 미스매치의 수리 여부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미스매치는 미스매치 승인을 제출하여 수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TMA는 미스매치 승인 통지서와 베이스라인 보고서를 참여은행에 발행할 것이다. 그 베이스라인 보고서는 그 미스매치의 승인을 반영한다. 또한 모든 매칭조건이 충족될 때 그 BPO는 지급된다.

매수자의 거래은행이 그 미스매치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은행은 TMA에 미스매치 거절 메시지를 제출한다. 그 후에는 TMA는 미스매치 거절통지서를 발행한다. 이 경우에는 그 베이스라인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는다. 그 거절된 데이터 셋은 유효하게 폐기되며 그 BPO는 지급되지 않는다.

### 3. 승인송장 관리와 지급대사

은행은 잠재금융에 관한 송장승인 프로세스와 거래의 결제일정 및/또는 송장대금의 회수를 관리한다(BAFT-IFSA). 매매물품이 일단 선적되면 매도자는 그의 거래은행이 매칭을 위해 관련 데이터 셋을 제출할 수 있도록 송장 및 운송 데이터를

그의 거래은행에 업로드를 해야 한다. 그 데이터 셋이 매치였거나 또는 미스매치가 수리되었다는 것은 상업송장이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도자의 거래은행/수취은행은 그 매도자에게 금융지원을 합의할 수 있고 설정(개설)된 모든 BPO는 상환의 재원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6)</sup>

그리고 매수자는 지급만기일에 지급하며(통상적으로 서류기일), 매도자는 그 대금을 수취하거나 또는 자신의 금융(있는 경우)을 상환하고 그 잔금을 수취한다(BAFT-IFSA). 승인된 송장관리에 의거하여 매도자의 거래은행/수취은행은 결국 BPO의 약정조건에 따라 매수자의 거래은행/채무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매도자의 거래은행/수취은행이 매도자에게 금융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BPO의 지급대금은 당해 금융의 상환자원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자의 거래은행/수취은행은 매도자에게 지급을 이행할 것이다.<sup>47)</sup>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대사를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sup>48)</sup> 전통적인 결제방식과 같이 대금이 영수되면, 은행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대신하여 그 결제대금을 서류가액(송장/환어음 금액)과 대사하고, PO 잔액을 관리한다(BAFT-IFSA). 리포팅(reporting) 서비스는 각 TMA에서 제공될 것이다. 각 TMA는 거래가 완료되면 보고서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베이스라인 매치 보고서는 베이스라인이 성공적으로 설정되면 자동적으로 발송될 것이며, 데이터 매치 보고서는 데이터 셋이 제출된 후에 자동적으로 작성될 것이다.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이들 보고서 이외에, ISO 20022 TSMT 메시징 표준이 제공된다. 이들 보고서는 활동보고서, 거래보고서, 그리고 현황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들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통하여 은행은 미결제된 구매주문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승인된 송장에 따라 결제대금을 대사할 수 있다.

#### 4.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시사점

그동안 국제무역결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발전해 왔다. 즉 글로벌화와 교역확대로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은행의 전통적인 신용장방식에서 간편하고 경제적인 추심방식 및 송금방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 간의 결제방식으로 변화해 왔으며, 또 정보혁명과 사회발전으로 전통적인 물리적인 방법에서 자동화·시

46) ICC 751E, p. 158.

47) *Ibid.*

48) ICC 751E, pp. 160~162.

스텝화와 포털화 등의 혁신적이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트레이드카드(GT Nexus에 통합), 볼레로시스템(bolero.net), 아이덴트러스트(IdenTrust) 등의 글로벌 시스템과 각 국가의 전자무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자무역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자무역의 발전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익숙하지 못한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의 가입에서부터 그 절차적인 어려움, 더욱이 고비용적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애로 기대와 달리 그 이점이 크지 않았으며, 기존 방법에 익숙하여 새로운 전자무역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솔루션의 개발과 그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전 세계의 무역거래 당사자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결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무역당사자를 통합·연결하는데 용이한 위치에 있는 SWIFT는 오픈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하는 TSU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전통적인 신용장방식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오픈 어카운트 방식과 같은 간편하고 경제적인 비신용장방식으로 이동하는 현실과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정보화되어 가는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역거래당사자는 자유롭게 거래당사자의 의사대로 상호 합의에 의해 효과적으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은 필수적으로 무역금융이 필요하고, 또 아직도 일부는 신용장의 지급약정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과 일부 종이서류의 데이터화를 위해 SWIFT의 회원인 은행의 매개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BPO가 고안되었다. TSU BPO는 전자적인 환경에서 종이서류를 디지털화하여 시스템화하고 그 이용의 편리성을 부여하였으며, 또 은행이 지급약정과 각종 무역금융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거래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더욱이 기존 전통적인 무역결제방식과 달리 결제방식의 구분이 필요 없이 거래당사자의 약정으로 자유로이 조건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따라서 BPO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약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고 매도자는 그 대금을 적기에 수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BPO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오픈 어카운트, 국제팩토링 등의 비신용장방식의 편리성은 물론 화환신용장, 지급보증서 보증신용장 및 신용보험과 같은 대안적 기능을 통해서 전통적인 무역금융 서비스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sup>49)</sup>

49) ICC 751E, p. 147.

## IV. 결 언

국제무역거래에서 도입된 BPO는 매수자와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되는 절대적인 지급약정이며, 그 지급여부의 결정은 물품을 선적한 후에 제시되는 데이터 셋의 매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 메시지의 교환과 매치여부는 TMA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TMA를 통하여 구조화된 데이터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매수자의 거래은행과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특정 거래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설정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다. 양측 거래은행의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베이스라인이 설정되며, 또한 옵션인 BPO가 합의되면 그 베이스라인에 BPO가 설정된다. BPO 거래는 URBPO가 적용되며, 또한 TMA의 거래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그리고 TMA는 그 거래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칙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매칭규칙에서 메시지 기준, 즉 “엄격한 매칭”은 한 필드의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는 상응하는 필드의 내용과 정확히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략 매칭”은 데이터 요소의 내용을 매칭 할 때, 대소문자, 스페이스 및 구두점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매칭시스템 하에서 매칭기준은 구매주문서에 의하여 매수자가 규정한다.<sup>50)</sup>

그리고 매칭결과가 불일치한 경우의 수리여부 결정, 불일치가 없는 경우의 은행에 사전 지급수권, 분쟁해결, 만기일에 대금영수, 그리고 결제대사와 PO 잔액관리 등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전통적인 방식과 유사하다.

따라서 BPO는 지금까지 전자무역의 발전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이 보완되었으며, SWIFT가 고안하여 주도하고 있고, 또한 ICC는 이에 적용될 통일규칙으로 URBPO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다. 따라서 BPO에 대한 이해는 물론 본격적인 운용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

50) ICC 751E, p. 6.

## 참 고 문 헌

- 채진익, 전자무역론, 청목출판사, 2014.
- \_\_\_\_\_,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12.
- \_\_\_\_\_,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 도입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_\_\_\_\_,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무역연구 제9권 제4호, 무역연구원, 2011 3.
- \_\_\_\_\_,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Open Account 제도의 활성화 방안”, 무역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7.
- Casteman, A., “Accelerating Global Trade Finance”, SWIFT, Jan., 2012.
- Hennah, D., “The BPO: a banker’s perspective”, *DCInsight*, Vol. 18, No 2, Apr-June 2012.
- Goparaju, M., Meyer, M. K and Chiu, C., “Five specialists analyze the new BPO rules”, *DCInsight*, Vol. 19, No 2, April - June 2013.
- ICC,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 Publication No. 751E, 2013.
- ICC,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Version 1.0, Publication No. 750E, 2013.
- ICC, “A Banking Commission Supply Chain Finance Project: Bank Payment Obligation”, 2011.
- Marchal, R., “The Trade Services Utility: latest developments”, *DCInsight*, Vol. 16, No 1, January - March 2010.
- Madhavan, Vinod, “BPO - a Step toward electrification in SCF”, *DCInsight*, Vol. 19, No 2, April - June, 2013.
- SWIFT, “The Value of SWIFT to the Financial Supply Chain”, Issue 6 Q2 2011.  
[https://www.swift.com\(2013.12.07\)](https://www.swift.com(2013.12.07)).
- [https://www.bangkokbank.com\(2013.12.03\)](https://www.bangkokbank.com(2013.12.03)).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nsaction Matching Application and Major BPO Business Scenarios**

Jin-Ik CHAE

The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or bank to a recipient bank to pay a specified amount under the condition of a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data or acceptance of mismatches. The BPO enables the participating banks to provide sellers and buyers with enhanced financing services. Therefore, BPO gives banks the tools to provide them with guarantees and other multi-banking services.

All the participating banks must use the same Transaction Matching Application(TMA) for BPO business. In order to exchange BPO-related data, banks must be subscribed to the same TMA scheme. Participation in the TMA scheme is limited to banks only. The TMA is matching and workflow application as instrument to determine whether to pay the BPO or not. Therefore, TMA will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e business of the BPO.

So,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chanism of a TMA and the major business scenarios in Banking Payment Obligation Transactions. In Particular, it has been included the exchange and matching of data messages, the disposal of discrepancies, document payment and others based on URBPO. This study will be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including swift com and icc.org and so on.

Keywords : BPO, URBPO, TMA, Data Matching, Document Payment, Business Scenario